

보도자료

##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 국가보안법 제정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2월 1일 오전 11시

장소: 느티나무 카페

<순서>

1. 대표 인사말
2. 2003 국가보안법 피해 상황 보고
3.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응답

---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강희남, 권영길, 권오현, 김광수, 노수희, 단병호, 문규현, 최병모 등

---

연락) 사무총장 김성란(011-594-7665), 정책팀장 박래군(016-729-5363)

##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의 입장

국가보안법은 사문화의 단계를 넘어 영구히 폐기처분해야 한다.

2003년 한해, 우리는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국가보안법이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회적 폐악을 저지할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하였다. 분단과 함께 탄생했고 분단을 먹이로 하여 존재해 온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우리는 결코 냉전시대의 반인권 상황과 반통일적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자주는 곧 친북이요, 친북은 곧 반국가적 행위”라는 국가보안법의 논리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백만의 촛불로 터져나온 평등한 한미관계정립이나 자주평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자주평화를 위한 반미’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매카시즘의 그물에 걸려 억압당하고 처벌되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냉전과 반복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과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은 공존할 수 없다.

시시때때로 광적인 매카시즘을 부활시키고 생각과 양심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수구냉전의 기류속으로 몰고가는 보수세력의 무기가 되고, 역사회귀 시도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국민에 의한 인권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진보와 개혁, 통일의 에너지인 국민들의 창조적 사고와 적극적 표현과 행동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고서는 시대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이제 진정 국가보안법과의 공존을 끝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속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놓은 감옥을 극복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선동하는 비이성적인 반인권 논리나 반민주적 논리가 우리를 쪼먹고 시대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끝장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5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004년을 국가보안법폐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시작할 것을 발의한다.

55년 수구냉전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와 통일을 향한 오랜 투쟁의 역사에 새로운 분기점을 창출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생명줄로 잡고 있는 반통일세력, 반민주세력들의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가는 국민의 힘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의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한 건기대회’의 물결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심판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당위적인 사회적 담론을 뛰어넘어 17대 국회의 첫해인 2004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기시켜 내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송두율, 김형주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3.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03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참여정부 출범 9개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

(2003. 2. 25. ~ 2003. 11. 25.)

조사·작성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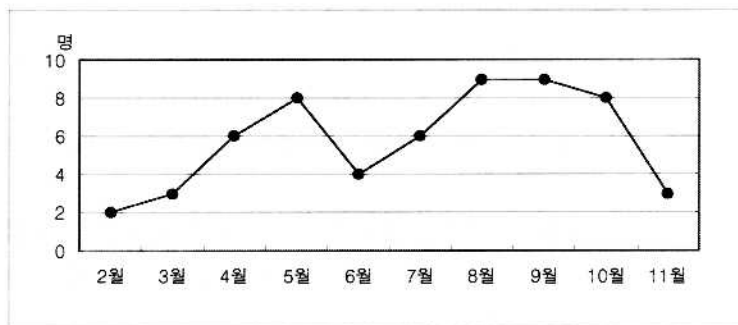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는 58명으로 집계되었다<sup>1)</sup>.

## 1. 참여정부 출범 9개월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현황

### 1-1. 월별 구속현황

이 기간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를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월별현황



참여정부 출범이후 날로 구속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5월 들어 구속자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한총련의 5.18 기념식장 시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위관련자에 대하여 강경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 한총련 대의원의 구속이 계속되었던 점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7월 25일, 검찰이 재차 '한총련 수배자 79명에 대해 불구속처리할 방침'을 밝혔음에도, 7, 8월 들어서도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가 잇달았는데, 이는 불구속 처리방침이 나오기 앞서 수사기관들이 앞다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 1-2. 범조항별 구속현황

1) 이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같은 기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349명에 비해 매우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288명, 2000년 128명, 2001년 118명, 2002년 126명에 비해서도 매우 낮아진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매우 줄어들었음에도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 검찰의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형태, 법원의 전근적인 판결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적용조항별 현황2)

조항	7조3항 (이적단체)	7조 5항 (이적표현물)	3조 (반국가단체)	8조 (회합·통신)	4조 (국가기밀)
인원	48명	6명	2명	1명	1명

참여정부 출범이후 9개월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58명 가운데 7조(찬양, 고무 등)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54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9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7조3항(이적단체구성·가입) 위반혐의로 48명이 구속되었는데, 이를 사건별로 살펴보면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적단체 조항이 적용된 45명, 자주대오 사건 1명, 민족해방군 사건 1명, 범청학련 사건 1명으로 파악되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이 가장 많은 7조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이도 6명으로 나타났다3). 예컨대 건국대학생투쟁위원회 김종근(03년 법대학생회장), 김용찬(측대 95학번)씨 등은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 적용을 받았는데, 인터넷상에 개설한 동아리 카페에 올려놓은 수련회 자료집 등 각종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것들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8월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트라이커부대훈련장 진입으로 구속된 학생들 호송차량을 막아 구속된 학생들 가운데 3명에게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2003년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읽었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적표현물 조항은 여전히 체포의 사유와 무관한데도 인신구속을 남용케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3조(반국가단체 가입) 위반혐의로 2명이 구속되었는데 송두을 교수, 이범재 씨(구국전위사건)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 대학과 통신을 했다는 이유로 동아대 총학생회장에게 8조 위반(회합통신)죄가 적용4)되었으며, 강태운씨(민주노동당 고문)는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에게 한겨레신문기사, 민주노동당 관련 자료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4조(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었다.

## 2. 참여정부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특징

### 2-1. 7조 구속자,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3.1% 차지

참여정부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에서 가장 특징점은 구속된 58명 가운데 93.1%에 해당하는 54명이 7조 위반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7조 위반 사건을 살펴볼 때,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안전을 해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에 의한 엄격한 법적용이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 2) 구속될 당시 적용된 범조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주요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 3)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조항이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속사유가 된 범조항 가운데 주요 기소내용이 된 조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적표현물 조항의 경우 오로지 이적표현물 조항으로만 구속된 이를 가리킨다.
- 4) 2003년 6월 4일 동아대 총학생회는 북한 <오중흥 청진제1사범대학>과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미션이 효순이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남북공동집회”를 열기 위해 청진사범대학과 연대성명서를 주고받았는데, 경찰은 이를 문제삼아 이 대학 총학생회장인 문옥주씨에 대해 회합·통신죄를 적용했다.

자의적 남용에 따른 법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 2- 2.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 전체의 77.5% 차지

9개월 동안의 총 구속자 59명의 77.5%인 45명이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총련 수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여전히 구속자는 이어졌으며 특히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규정, 한총련 의장 등 간부 44명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린 점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 3.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구속

수년이 지난 사건들에 대해 갑자기 인신 구속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여전하였다. 건학투위는 2002년 노동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현재 조직자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일시적 조직의 활동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삼아 구속조사를 하는 것에 실적올리기 관행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직후인 2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던 이범제씨가 구속되었는데, 지난 1994년 발생했던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1995년부터 해외여행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공안당국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예처럼 이미 지난 사건을 빌미삼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인식구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4. 법원, 100% 유죄판결

참여정부 출범이후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경향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100% 유죄판결을 보이고 있다. 9개월 동안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7명 중 91.9%인 3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높은 집행유예율에 비해 단 한건의 무죄판결은 없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국가보안법 반대 현수막”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오히려 이를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sup>5)</sup>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한 법원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은 제11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대구지검은 2003년 10월, 11기 한총련 대의원인 최성택(경북대), 최용석(계명대) 씨를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동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은 11월 28일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다.

5) 2001년 2월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춘천시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02년 10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3년 5월, 대법원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11기 한총련에 대한 첫 이적단체 판결은 엄격한 법리 검토없이 “한총련=친북적=이적단체”라는 예단에 따른 판결이고, 법원의 전근대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공안수사기관의 짜맞추기식 수사”<sup>6)</sup>라는 비판이 일었던 보건의료인 모임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년 6월 1일 선고), 건대학투위 이적표현물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지방법원 10월 26일 선고) 등 시대착오적 판결로 일관하였다.

---

6) 경찰청 홍제동 분실은 2001년 10월, 이미 그해 초 활동을 중단한 <진보의련> 관련자 8명을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 8명 가운데 4명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영장 자체가 청구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검찰은 또다시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2002년 1월 검찰은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만을 불구속 기소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으로 기소된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국가보안법 개정안 및 폐지안 질의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우리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법률 폐지를 비롯해, 각종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12월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답변지는 17대 총선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에게는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이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지도 17대 총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질의 내용

**첫째**, 현행 국가보안법은 개정과 폐지 또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 의원의 견해는?

**둘째**, 최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으로 인권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의해 민주, 통일운동 단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귀 의원의 견해는?

**넷째**,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귀 의원께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 강희남, 권영길, 권오현, 김광수, 노수희, 단병호, 문규현, 최병모 등

## <공개질의 내용과 취지>

**첫째**, 현행 국가보안법은 개정과 폐지 또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 의원의 견해는?

국가보안법은 존속 55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여 오면서 그 폐폐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대표적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유엔의 자유권 위원회(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인권이사회로 알려짐)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15일 이후 발표된 6.15공동선언은 냉전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통일의 남북관계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온 겨레의 통일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시대의 흐름을 막아나서는 대표적인 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헌법과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과도 모순된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귀 의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으로 인권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 나라는 1990년 4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제1선택의정서의 가입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권고하는 바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 7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고, 1995년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유엔인권위



원회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1998년 11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두 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패소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999년 한국 정부의 2차 보고서 심의하고, 국가보안법의 제7조 우선 삭제, 최종적 폐자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귀 의원께서는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국내외 여론을 참작해 볼 때 국가보안법의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독소조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셋째,**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의해 민주, 통일운동 단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귀 의원의 견해는?

국가보안법 7조 이적규정에 의해 현재 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을 비롯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진보의련 등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국가보안법 7조 이적규정에 의해 이적단체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먼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이 초헌법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18조(양심·사상의 자유), 19조(의사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념의 모호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광범하게 남용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7조는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

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이 7조의 삭제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높아있습니다.

귀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넷째**,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귀 의원께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1998년과 1999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었을 때 최소한 독소조항이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였지만, 결국 국회에서 개정 작업조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20세기 후반부 냉전체제에 의해 탄생되고, 강화되었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귀 의원께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로써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